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38

발의연월일: 2024. 7. 5.

발 의 자:서영교·박희승·임오경

박지원 • 이훈기 • 윤준병

위성곤 · 임호선 · 이해식

한정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,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.

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경제적 어려 움을 초래할 수 있음.

이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활능력 향상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(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	제17조(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
감면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감면) ①
장애인(제29조제4항에 따른 국	
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)이 보	
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	
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	
로서 취득세 또는 「지방세	
법」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	
동차세(이하 "자동차세"라 한	
다) 중 어느 하나의 세목(稅目)	
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	
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	
자동차세를 각각 <u>2024년 12월</u>	<u>2027년 12월</u>
31일까지 면제한다.	31일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9조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	제29조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
면) ① ~ ③ (생 략)	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	4
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	
유공자(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	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각	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 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 을 포함한다)로서 상이등급 1 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람(이하 "국가유 공자등"이라 한다)이 보철용・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여 등록하는(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 (稅目)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 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 월 31일까지 면제(「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| 제 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

<u>2027년 12</u>
월 31일

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 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 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)한다. 다만, 제17조에 따 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 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
1. ~ 4. (생 략)

⑤ (생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⑤ (청채고 가·오)

(b) (연행과 같음)